지평지성 Newsletter
| 2012년 4월 제40호 |

▌최신 법령▐

[지적재산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최승수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1. 개정내용

최근 학교폭력이 다시 사회문제화되고, '멀티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법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멀티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58조).

예고편 영화나 인터넷을 통해 선정적·폭력적인 내용의 영상이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음악영상파일(인터넷 뮤직비디오물)인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예고편 영화의 경우 전체관람등급에 더하여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추가했으며(법 제29조제2항), 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습니다(법 제32조제1항).

2. 다운로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314호, 2012. 8. 18. 시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캄보디아 | 라오스 | 태국
Copyright 2008 JIPYONG JISUNG All rights reserved.